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이춘석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0056 발의연월일: 2025. 4. 23.

발 의 자:이춘석·한병도·윤종군

윤준병 • 서영교 • 김윤덕

정준호 • 서미화 • 백선희

임호선 · 이연희 · 임미애
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사람에 대해서만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·접수할 수 있으며, 고향사랑 기부금을 재원으로 하는 고향사랑기금은 기부금의 모집·운용에 필요한 비용, 답례품 제공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거나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등 정해진 목적으로만 사용되도록 하고 있음.

법인의 기부 행위의 경우 과도한 기부금 모집과 강요 등 부작용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금지하고 있지만,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확충과 국가 균형발전 실현을 위해 인구감소지역에 한해서는 그 제한을 완화하여 기부금 모금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고, 시·군·구의 고향사랑기금의 대원 확보 측면에서 시·도의 고향사랑기금의 일부를 시·군·구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음.

이에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한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하지 아니한 법인에 대해서 기부금을 모금·접수할 수 있도록 하며, 특별시·광역시·도·특별자치도는 일정 범위 내에서 고향사랑기금의 일부를 그 관할구역 안에 있는 시·군 및 자치구에 설치된 고향사랑기금으로 전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2조 등).

법률 제 호

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 중 "사람으로부터"를 "사람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하지 아니한 법인으로부터"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"사람에게"를 "사람 또는 법인에"로 한다.

제4조제1항 중 "사람에"를 "사람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하지 아니한 법인에"로 하고,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법인에 대하여는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만 모금·접수할 수 있다.

제5조제1항 중 "타인의"를 "타인 또는 다른 법인의"로 한다.

제6조제1항 중 "사람에게"를 "사람 또는 법인에"로 한다.

제8조제2항 중 "사람"을 "사람 또는 법인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"개인별"을 "기부자별"로 한다.

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"비용 및 제4항에"를 "비용, 제4항에"로, "외에는"을 "및 제5항에 따른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고향사랑기금으로 전출하는 경우 외에는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⑤ 특별시·광역시·도·특별자치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고향사랑기금의 일부를 그 관할구역 안에 있는 시·군 및 자치구에 설치된 고향사랑기금으로 전출할 수 있다.

제14조제1항제1호 중 "주민"을 "주민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법인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	제2조(정의)	
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	
1. "고향사랑 기부금"이란 지방	1	
자치단체가 주민복리 증진 등		
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재		
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해당		
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		
사람으로부터 자발적으로 제	사람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	
공받거나 모금을 통하여 취득	에 소재하지 아니한 법인으로	
하는 금전을 말한다.	<u>부터</u>	
2. "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"이	2	
란 지방자치단체가 광고, 정		
보통신망의 이용, 그 밖의 방		
법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		
고향사랑 기부금을 제공하여		
줄 것을 다른 <u>사람에게</u> 의뢰	사람 또는 법인	
•권유 또는 요구하는 행위를	<u>에</u>	
말한다.		
제4조(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	제4조(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	
주체 및 대상) ① 지방자치단	주체 및 대상) ①	
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		
민이 아닌 <u>사람에</u> 대해서만 고	사람 또는 해당 지방자	
향사랑 기부금을 모금・접수할	치단체에 소재하지 아니한 법	

수 있다. <단서 신설>

② · ③ (생 략)

제5조(기부의 제한) ① 누구든지 저 <u>타인의</u> 명의나 가명으로 고향 사랑 기부금을 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② (생략)

제6조(기부·모금 강요 등의 금 지지) ① 누구든지 업무·고용 그 밖의 관계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고향사랑 기부금의 기부 또는 모금을 강요하여서 는 아니 된다.

② (생 략)

- 제8조(고향사랑 기부금의 접수 저 및 상한액) ① (생 략)
 - ② 지방자치단체가 고향사랑 기부금을 접수한 경우에는 고 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한 <u>사람</u> (이하 "기부자"라 한다)에게 지

인에 <u>다만</u> ,
법인에 대하여는 「지방자치분
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
별법」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
구감소지역에 해당하는 지방자
치단체만 모금・접수할 수 있
<u>다.</u>
② • ③ (현행과 같음)
세5조(기부의 제한) ①
타인 또는 다른 법인의
② (현행과 같음)
세6조(기부·모금 강요 등의 금
지) ①
<u>사람 또는 법인에</u>
<u>.</u>
② (현행과 같음)
세8조(고향사랑 기부금의 접수
및 상한액) ① (현행과 같음)
②

또는 법인-----

방자치단체의 장의 명의로 영 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.

- ③ <u>개인별</u> 고향사랑 기부금의 연간 상한액은 2천만원으로 한 다.
- ④ (생략)
- 제11조(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등) 저 ① (생 략)
 - ② 제1항에 따른 기금(이하 "고향사랑기금"이라 한다)은 고향사랑 기부금을 재원으로 하고, 제3항에 따른 모집·운용비용 및 제4항에 따른 답례품제공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. 다만,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사업 또는 목적을 지정하여 기부한 고향사랑 기부금의 경우 해당 사업 또는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.
 - 1. ~ 4. (생 략) ③ · ④ (생 략) <신 설>

· ③ 기부자별
· ④ (현행과 같음)
세11조(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등)
① (현행과 같음)
2
비용, 제4항에
및 제5항에 따른 다른
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고향사
랑기금으로 전출하는 경우 외
에는
1. ~ 4. (현행과 같음)
③ · ④ (현행과 같음)

⑤ (생략)

- 제14조(불법 고향사랑 기부금의 지반환)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 자에게 반환하고, 교부된 영수 증을 회수하여야 한다.
 - 1.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<u>주민</u>으로부터 고향사랑 기부금을 받은 경우
 - 2. ~ 7. (생 략)
 - ② (생 략)

7	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법	벌
-	위에서 고향사랑기금의 일부를	==
-	그 관할구역 안에 있는 시ㆍ급	<u> </u>
1	및 자치구에 설치된 고향사형	<u>}</u>
	기금으로 전출할 수 있다.	
(<u>⑥</u> (현행 제5항과 같음)	
세]	14조(불법 고향사랑 기부금의	긔
1	반환) ①	_
-		_
-		_
-		_
-		
]	1	_
	주민 또는	<u>-</u>
	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학	
	법인	_
	 2 ~ 7 (현행과 같음)	

② (현행과 같음)